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5,840,468	7,075,214
일반회계		196,043,824	5,881,315
특별회계		39,796,644	1,193,899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0,321,750	909,6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28,750	438,8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693,000	470,790
	기타특별회계	9,474,894	284,247
	주택사업특별회계	6,600	1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62,597	28,878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1,820	4,25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05,000	18,150
	공업단지특별회계	891,267	26,73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09,532	198,2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5,000	6,15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5,768	473
	기반시설특별회계	37,310	1,1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70,3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